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편드명 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 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 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별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별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</p>	<p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</p>

	<p>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23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<u>제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5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3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<u>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5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영업일</u>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5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8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9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</p>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영업일</u>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5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8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9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</p>

	<p>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~ ④(생략)</p>	<p>을 지급한다.</p> <p>③ ~ ④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26조(환매연기)</p> <p>① ~ ④(생략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 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7영업일</u> 이전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8영업일</u> 이전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6조(환매연기)</p> <p>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 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7영업일</u> 이전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8영업일</u> 이전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</p>	<p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</p>

	<p>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생략)</p>	<p>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~ 3. (생략) ②(생략)</p>	<p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38조(보수) ①(생략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③(생략)</p>	<p>제38조(보수) ①(현행과 같음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③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생략) 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략) ⑥(생략)</p>	<p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</p>	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</p>

	<p>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(생략)</p>	<p>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(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</p>	<p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u>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투자신탁(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<u>으로</u>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</p>

	<p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 (생략) ② ~ ⑩ (생략)</p>	<p>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</p>
	<신설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